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제37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2020. 7. 7(화) 16:00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Seoul Scholarship Foundation

제37회 임시 이사회

- 일 시 : 2020년 7월 7일(화) 16:00
- 장 소 : 서울장학재단 회의실
- 재적이사 : 총 11명
- 출석이사 : 총 7명
- 출석감사 : 총1명

사무국장이 제37회 임시이사회 성원을 보고하다.

이사가 인사말에 이어 안건을 간단히 설명하고, ○○○ 사무국장이 미리 배포된 회의자료를 통하여 주요보고안건에 관하여 설명하다.

- 보고안건**
1. 전차 이사회 회의보고
 2. 재단 운영보고
 3. 장학사업 추진 현황 보고

보고사항이 완료되어 이사가 다음 안건에 관하여 심의를 구하다.

제207호 2020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변경에 관한 건

이사는 제207호 2020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변경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코로나19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하여 글로벌 장학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글로벌 장학사업의 예산과 기존 장학사업 중 불용예산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준비와 학업 지속을 위한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지원을 위한 신규 장학사업(예산 406,240천원)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2020년 예산 변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별 예산변경과 기부 기관((주)○○○○○)의 입금 불가한 상황에 따른 기부금 예산 감액, 코로나19로 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시 출연금(국외여비) 감액을 반영한 사항이라고 말하고, 세입 총계 당초 13,101,519천원에서 110,000천원을 감액하여 12,991,519천원으로 변경하고, 세출 총계 당초 13,101,519천원에서 사무국운영비 10,000천원 감액, 장학사업운영비 100,000천원을 감액하여 총 12,991,519천원이라고 설명하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를 통해 설명하다.

○○○ 이사가 신규 장학사업이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 될 예정인지 묻다.

○○○ 사무국장이 서울장학재단 역할재정립 및 미래전략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대학생 생활비 지원의 필요성이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으며, (가칭)희망플러스장학사업의 형태로 진행이 되거나, 기존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을 확장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지속 사업으로 추진 될 예정이라고 말한다.

○○○ 이사가 지원대상이 졸업예정자에게만 국한된 건지 묻다.

○○○ 부장이 현재 졸업예정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준비와 생활비 마련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는 졸업예정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한다.

○○○ 이사가 향후 대상이 확대될 예정인지 묻다.

○○○ 사무국장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대상 확대 및 대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금액 상향까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한다.

○○○ 이사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신규 장학사업이 추진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 이사가 많은 기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예산변경이 불가피한 상황들을 겪고 있고, 재단에서도 적절하게 예산변경을 통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말한다.

이사장이 2020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7호 2020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변경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08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

이사가 제208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다.

사무국장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2019.12.13.)에 따라 징계의 실효성 확보 및 보수규정 내부에 상충되는 조항 등 모순점 개선과 급여성 복리후생비인 선택적 복지비 규정 반영, 2020년 연봉인상률을 반영하여 직급별 기본 연봉한계액표를 조정, 명예퇴직금 및 조기퇴직금 지급규정 신설과 퇴직금 지급규정 내부의 모순점 개선 및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취지를 말하고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회의 자료를 통해 설명하다.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 중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신설에 대하여 수당 산정기준이 서울시 규정과 다소 차이가 있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시 공기업담당관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설명하다.

○○○ 감사가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신설과 관련하여 재단에서 현재 수당 지급 대상자가 있는지 묻다.

○○○ 사무국장이 조기퇴직수당은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직원이 대상이며,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직원이 대상자라고 말하고, 현재는 대상자가 없으며 대상자 발생시점은 향후 5년 이후라고 말하다.

○○○ 이사가 현재 지급 대상 인원이 있다면 금번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나, 재단에 현재 대상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한 후 향후에 서울시 협의를 거쳐 재 안전 상정하는 방법과,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신설 의결을 보류하고 추후 상정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두 결정 다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하다.

○○○ 이사가 강등과 정직의 감액 규정 세부사항과 제20조 근속년수 산정관련 개정 세부사항에 대해 묻다.

○○○ 사무국장이 현행 규정 상 강등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월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로하며, 감봉 총액은 월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정직도 강등과 감액규정이 같다고 말하고, 현재 규정이 직원들에

게는 유리한 조항이나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조치 요구에 따라 징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징계가 강화되는 사항은 취업규칙 개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 상 직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2회에 걸쳐 전 직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전 직원 동의로 결정 된 사항이라고 말한다. 근속연수 계산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에서는 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은 100분의 50만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저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노동부행정해석을 보면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정직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근속연수에 포함한다는 해석과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과 같은 법정 휴직 외 질병으로 인한 병가휴직 등도 계속 근로 연수에 포함한다는 해석이 있고 재단 인사규정에서 휴직 사유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직원의 휴직기간은 계속 근무연수로 산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말한다.

○○○ 이사가 근속연수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타 출연기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향후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한다.

○○○ 감사가 현재 대상자가 없고 실효성이 없으므로 명예퇴직수당과 조기퇴직수당 신설(안)은 의결을 보류하고 다음에 재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이사장이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다른 이사들에게 의견을 구한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08호 보수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제23조의2(명예퇴직수당)와 제23조의3(조기퇴직수당)은 의결을 보류하고 나머지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하다.

이사장은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폐회를 선언하다.

2020년 7월 7일